

고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 안 번 호	011
------------	-----

제출년월일 : 2004. 8. 5.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제안이유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화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안 제3조 내지 제7조)
- 나.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안 제8조 내지 제11조)
- 다.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안 제12조 및 제13조)
- 라. 전자우편 ID보급(안 제14조 및 제15조)
- 마.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안 제16조)
- 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안 제17조 내지 제19조)

3. 참고사항

- .자치단체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
 - (행정자치부 자정12410-584, 2000. 7. 26.)

4. 입법예고

- .입법예고 : 2004. 6. 29. ~ 2004. 7. 18.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5. 본 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조 및 군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이용
6. 군정의 국내.국외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 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 또는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 자료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2. 정치적 비방, 흑색선전 등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오류, 연습 또는 장난삼아 게시된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등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③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전자민원창구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여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계시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 성립한다.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①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 결과의 전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담당부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민원상담 기능제공) ①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의 의견 교환을 위해 홈페이지에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대한 빠른시간 내 답변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군수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①군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②군수는 전자우편 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 받은 주민은 게재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국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및 교류, 외국인 투자유치, 관광·통

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등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개인정보 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암호화, 물리적 보안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비밀번호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